2020년 신규농업인(귀농)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추가신청 추진계획

함평군으로 이주한 귀농인 또는 신규농업인에게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을 통하여 안정적인 농업·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

❑ 추진방향

○ 신규농업인(귀농인)에게 영농기술, 품질관리, 경영·마케팅 등에 필요한 단계별 현장실습(체험 등)을 통하여 농업·농촌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유도

❑ 추진계획

○ 사 업 량 : 1개소 2농가(귀농연수생 1명, 선도농가 1명)

○ 추진기간 : 2020. 5월 ~ 11월

○ 신청기준 및 요령

- 신청기간 : 2020. 3. 16.(월) ~ 3. 31.(금) (16일간)
-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

·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 농업 종사를 목적으로 함평군으로 이주한 최근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해당 지역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의 신규농업인, 만 40세 미만 청장년층

○ 사업내용 : 신규농업인(귀농) 대상 선도농가 현장실습 지원

- (귀농연수생) 월 80만원 한도, 3~7개월(160시간/월)
- 단, 매월 10일 또는 80시간 이상 연수시 교육훈련비 지원

※ 1일 지급단가 산정기준(8시간 기준) : 4만원(식비, 교통비 등)

- (선도농가) 월 40만원 한도, 3~7개월

○ 제출서류

- (선도농가) 붙임 5, 붙임 6, 붙임 7, 붙임 8, 붙임 9, 붙임 10
  농지원부 1부,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본 1부,
  ※ 가공판매 : 영업신고증, 통신판매신고증
- (연 수 생) 붙임3, 붙임 4, 붙임 8, 붙임 9
  농지원부1부,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, 주민등록등·초본 각1부,
  교육수료(이수) 확인서 1부 등

○ 사업추진 절차

사업계획 추가 공고 (3월)	○ 센터 홈페이지 공고 2020. 3. 16. ~ 3. 31.까지(16일간)
▼	
사업계획서 추가 접수 (3월)	○ 귀농연수생과 선도농가 연수신청서 및 추진계획서 검토 ※ 2020. 3. 31.(화)까지 제출된 추진계획서에 한하여 심사
▼	
1차 서류심사 (4월 1일)	○ 사업신청서 서류심사 - (귀농연수생)평가기준 · 신청자 자격(35점), 교육(20점), 사업규모(10점), 사업계획(20점), 기타여건(15점) - (선도농가)평가기준 · 연수시행 기반 및 수행능력(30점) · 연수계획의 적절성 및 실효성(20점) · 시스템활용을 통한 코칭 및 사업화 역량지도(30점) · 기타여건(20점)
▼	
2차 현장실태조사 (4월 2일)	○ 1차 서류심사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- 배점기준 : 1차 서류심사와 동일
▼	
추가 지원대상자 선정 (4월 7일)	○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
▼	
추가 사전교육 (4월 9일)	○ 현장실습 사업추진에 따른 대상농가 서류작성 요령 ○ 운영계획서 및 교육일지, 청구서 작성 ○ 학습관리시스템(LMS) 활용 현장실습보고서 작성 등
▼	
사업수행 (4월～11월)	○ 사업비 지원 및 컨설팅 ○ 월 현장실습 추진상황 현지점검 - 매일 대상자와 담당자간 단톡방으로 출근 및 추진상황 점검 - 매일 출근/퇴근 출석관리시스템(스마트폰활용)에 등록 ○ 월 수당지급 수립
▼	
추진실적 및 평가	○ 별도계획 수립 추진

❑ 사 업 비 : 8,400천원(국비 50%, 군비 50%)

❑ 기대효과

○ 귀농 농가 실정에 맞는 실질적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

○ 신규 농업인력 유입을 통한 농촌지역 활력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